

의안번호	2202605
의 퇴 인	박형수의원
회 답 일	2024.10.29.
추 계 번호	24D259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제2항제1호(국회의 의원정수) 신설	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특별시·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2명 이상 4명 이하임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1조제2항제1호(국회의 의원정수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당 2명 이상 4명 이하 선출(안 제21조제2항제1호 신설)

-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를 특별시·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2명 이상 4명 이하로 규정하여 해당 도시들에서는 선거구의 확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－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특별시 등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4명 이하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
 - － 일반적으로 선거구의 크기는 투표용지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경우, 투표용지 크기¹⁾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

1) 국회입법조사처(2016) 「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 개방형 명부제의 특징과 시사점」에 따르면, 선거구가 크면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가 커지게 되고, 반대로 선거구가 작으면 투표용지도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남

- 또한 유효득표율 10% 이상인 후보자 수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선거구가 확대되면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선거비용제한액(=1억원+인구수×200원+읍·면·동수×200원)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 선거비용보전액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특별시 등에 중선거구제 도입 시 예상되는 투표용지 크기의 변화,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 및 후보자 수, 유효득표율 10% 이상 후보자 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54개 지역구에 총 693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당 후보자 수는 2.7명이고,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1,800만원이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